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호

부산시의회 개방형직위(정책지원담당관) 임용시험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방형직위(정책지원담당관)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3항(시험의 공고)

□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4호) 64,509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4호) 63,430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오기입력에 따른 정정

1.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직위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업무
정책지원 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1명	2년 (주 40시간)	•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임용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3.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4. 응시 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공직선거법, 병역법, 치료감호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변호사 · 변리사)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경 력 기 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입법, 정책협력 및 의정활동지원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5.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 4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임용예정직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개방형 4호	정책지원담당관	-	63,430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3.2.15.(수) ~2.27.(월)	'23.2.28.(화) ~3.7.(화)	서류전형	'23.3.29.(수) ~ 3.30.(목)	시의회사무처	'23.3.31.(금)
		면접시험	'23.4.10.(월) ~ 4.14.(금)	시의회사무처	'23.4월중

※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ㅇ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 심사

*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직무특별요건 : 정보화능력(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 활용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3. 2. 28.(화) ~ 3. 7.(화), 9:00~18:00(점심시간 제외)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인력개발팀(시의회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메일,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력개발팀 임기제 채용담당자 (☎051-888-8332)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함께 우송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익일 특급)까지 유효함**(등기수령여부 필히 유선확인 바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날인
-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되며, 원서접수 시 **해당 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 이상**(학사, 석사, 박사 등)**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행기관 관인 날인된 원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추가 제출**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증명사진 1매 : 3.5×4.5cm(최근 6개월 이내)

⑫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②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③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사본) 각 1부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5점 이내)
⑤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⑥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자유형식, A4 3매 이내)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ㅇ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유효기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명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함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기 바람

ㅇ **코로나 확진 등** 기타 전염병으로 면접(당일) 미참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등**은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력개발팀(051-888-8332)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직무수행요건명세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